



정 문 호
본회 전문위원

주주제안에 관한 실무사례 해설

1. 서언

- 최근 주주총회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금년 12월결산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로부터 많은 주주제안이 있어 실무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 같은 주주제안의 증가는 이른바 '소액주주운동'의 여파로 주주의 권리의식 강화가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주가하락에 의한 투자손실을 만회하려는 일부 투자자클럽 등에서의 전략적 활용이 늘어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됨.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종래의 일상적 절차를 벗어났기에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실무자는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주주총회 진행 절차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2월결산 주주총회과정에서 비교적 많이 제기되었던 주주제안관련 실무상 문제를 상담사례 형식으로 소개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상담사례

〈질의 1〉

- 당사는 회계처리 전산화를 마무리하여 정기 주주총회를 2월에 개최하여 불필요한 주총기간을 단축하려 함(예년에는 3월 중순이후 개최).
- 그런데 2월초에 주주제안을 해온 바, 당사 주주총회 예정일의 3주전에 해당됨. 이 경우 법적요건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응답 1〉

- 상법에 의하면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다만,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총회일을 단축함으로써 주주제안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부터 6주 전에 주주제안할 수 있도록 최근에 상법을 개정하였음(개정 2009.1.30).
-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총회일을 앞당긴다고 해도 주주제안권을 훼손할 수 없다고 봄. 다만 발생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극단적으로 소집통지후 주주제안이 있더라도 인정해야 할 것임.

-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결하기 불편한 주주제안이 예상된다면 임시주주총회 활용을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

- 일부소액주주들이 추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보전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무상증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하였음.
-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응답 2〉

- 주주총회는 일반회의체와 달리 법령이나 정관에 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해진 것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제안 할 수 없는 것임.
- 특히,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권한임.
- 또한,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의 제시없이 막연하게 무상증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구체적 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무상증자관련 주주제안은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 위반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 또한,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상장회사의 경우 실제로는 전무함)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막연한 제안은 일종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것(시행령 제12조)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

- 일부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투자자펀드에서 그 책임자들이 추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추가부양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취득을 주주제안 함.
-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응답 3〉

-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이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음. 즉,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면(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함.
- 아울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의목적사항으로 제안되었다면 거부할 수 없고 수용해야 할 것임.
- 다만 주주제안 동기가 지극히 개인고충 처리를 위한 것(투자손실의 보전)으로 보여지나 자기주식 취득의 효과가 전체 주주의 이해로 귀결되므로 이를 이유로 거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의 4〉

- 소액주주의 연대모임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주가가 하락된다고 판단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단순히 액면분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주제안 하였음.

- 이 경우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는?

〈응답 4〉

- 액면분할(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이 주가 부양 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주주제안이 여러 건 제기된 실정임.

- 1주당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액면분할은 정관변경 사항임.

-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그 의안의 요령을 밝혀 통지해야 하므로 주주제안도 그 내용이 구체적 명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단순히 액면분할해 줄 것만을 제안했다면 부적법한 제안으로 거부할 수 있음.

- 적법하게 제안되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결의로서 가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요구됨.

〈질의 5〉

- 당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이며 상근감사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일부 주주들이 감사선임을 주주제안 함. 이에 경영간섭 의도가 분명한 소수주주 요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구현하고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정관변경과 감사위원선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결정·통보함.

- 이 경우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의 효력과 실무대응 방법은?

〈응답 5〉

-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에 정관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안이 특별결의를 통해 가결된다면,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상실되고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다만 감사위원회제도의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안이 부결된다면 주주제안은 유효하며, 이 경우 종전의 정관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회의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질의 5〉

- 전문가들로 조직된 투자자연대가 경영방침에 반대하여, 중간배당 실시, 분기배당 실시, 유상감자 실시, 자기주식 매입, 배당금 상향조정 등 여러 건의 주주제안을 제기하였는 바, 회사는 그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표결처리코자 함.

- 이같은 회사측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응답 5〉

- 주주총회는 원론적으로 보면 회사 경영에 관한 어떤 사안이든지 내놓고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복잡다기하고 거대화되고 있는 경영현실은 효율성을 중시하여 법정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아울러,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도입된 주주제안제도도 일정한 경우에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②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장회사만 해당]인 경우, 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그러나 판례(서울북부지법 2007.2.28. 자 2007카합215 결정)에서는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은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

지 않은 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의 폭넓은 실현을 위하여 그 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추상적인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재량판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주주제안에 대하여 법적요건의 미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총회에 상정하여 심의·표결하는 것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폭넓게 존중하는 적극적·진취적인 결정이라 판단됨. 다만, 법적 분쟁 소지는 남아있음(부적법한 주주제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법적분쟁 우려되는 등).
- 결국은 사실적 관계, 확보 의결권 수를 근거로 내린 전략적 판단으로 외형적·대외적으로는 소수주주 배려, 내부적으로는 유사사례 재발방지의 경영판단이라 사료됨. ☐

• 토막 상식

루이스변곡점(Lewisian Turning Point)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성장이 정체된다는 이론으로 197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서 루이스(William Arthur Lewis)가 제시하였다. 값싼 노동력 공급이 계속될 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도시화가 정점에 이른 뒤 노동력 부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산비용이 높아져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던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루이스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